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974 발의연월일: 2021. 6. 22.

발 의 자: 박덕흠 · 서범수 · 권명호

한무경 • 홍문표 • 백종헌

송언석 • 이주환 • 박대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게 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에서 회원보다 일반이용자에게 우선 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의 골프대중화 취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중골프장이 유사회원제 방식의 모집행위를 통해 골프대중화 취지를 무색하게 하 고 사실상 탈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골프장을 운

영하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하며,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산 정하도록 함으로써 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골프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1조제2항·제3항 신설 등).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대중골프장(제14조에 따라 대중골프 장을 병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전년도 대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대중골프장(제1항의 병설 대중골프장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제30조제5호 중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을 "체육시설의 이용질서를 위반한"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5조의2(대중골프장의 이용료)
	대중골프장(제14조에 따라 대
	중골프장을 병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전
	년도 대비 물가상승률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이하로 대중골프장의 이용
	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생 략)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
	자는 회원이 체육시설을 이용
	하려는 경우 일반이용자에 우
	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u>야 한다.</u>
<u> <신 설></u>	③ 대중골프장(제1항의 병설
	대중골프장을 포함한다)을 운
	영하는 자는 제17조제1항을 위
	반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	제30조(시정명령)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	

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 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 1. ~ 4. (생 략)
- 5. 제21조에 따른 <u>회원제 골프</u>
 <u>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u>
 <u>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한</u>
 때
- 6. ~ 8. (생 략)

•	

- 1. ~ 4. (현행과 같음)
- 5. -----<u>체육시설의</u> 이용질서를 위반한---
 - 6. ~ 8. (현행과 같음)